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오기 정정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9년 11월 21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"하나UBS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"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수준으로 한다.(수준이라 함은 ±10% 범위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"하나UBS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"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수준으로 한다.(수준이라 함은 ±10%P 범위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**동종유형총보수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**동종유형총보수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증권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9년 11월 21일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오기 정정

<table>
<tr><td>제2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2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가. 자집합투자기구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/tr><tr><td>하나 UBS 글로벌 이머징 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 [채권-재간접형]</td><td>90% 수준 (수준이라 함은 ±10% 범위내를 말함)</td></tr></table>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가. 자집합투자기구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/tr><tr><td>하나 UBS 글로벌 이머징 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 [채권-재간접형]</td><td>90% 수준 (수준이라 함은 ±10%P 범위내를 말함)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2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
가. 투자전략
(1) 모투자신탁에의 투자
※ 수준이라 함은 ±10% 범위내를 말한다.</td><td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
가. 투자전략
(1) 모투자신탁에의 투자
※ 수준이라 함은 ±10%P 범위내를 말한다.</td></tr>
<tr><td>제2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동종유형총보수
(생략)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동종유형총보수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4부
집합투자기구
관련회사에
관한 사항</td>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재형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오기 정정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9년 11월 21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"하나UBS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"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수준으로 한다.(수준이라 함은 ±10% 범위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"하나UBS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"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수준으로 한다.(수준이라 함은 ±10%P 범위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증권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9년 11월 21일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오기 정정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제2부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

<table>
<tr><td>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가. 자집합투자기구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/tr><tr><td>하나 UBS 글로벌 이머징 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 [채권-재간접형]</td><td>90% 수준 (수준이라 함은 ±10% 범위내를 말함)</td></tr></table></td><td>가. 자집합투자기구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/tr><tr><td>하나 UBS 글로벌 이머징 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 [채권-재간접형]</td><td>90% 수준 (수준이라 함은 ±10%P 범위내를 말함)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
가. 투자전략
(1) 모투자신탁에의 투자
※ 수준이라 함은 ±10% 범위내를 말한다.</td><td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
가. 투자전략
(1) 모투자신탁에의 투자
※ 수준이라 함은 ±10%P 범위내를 말한다.</td></tr>
<tr><td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td>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월지급식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오기 정정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9년 11월 21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"하나UBS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"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수준으로 한다.(수준이라 함은 ±10% 범위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"하나UBS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"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수준으로 한다.(수준이라 함은 ±10%P 범위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**동종유형총보수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**동종유형총보수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증권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9년 11월 21일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오기 정정

<table>
<tr><td>제2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2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가. 자집합투자기구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/tr><tr><td>하나 UBS 글로벌 이머징 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 [채권-재간접형]</td><td>90% 수준 (수준이라 함은 ±10% 범위내를 말함)</td></tr></table>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가. 자집합투자기구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/tr><tr><td>하나 UBS 글로벌 이머징 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 [채권-재간접형]</td><td>90% 수준 (수준이라 함은 ±10%P 범위내를 말함)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2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
가. 투자전략
(1) 모투자신탁에의 투자
※ 수준이라 함은 ±10% 범위내를 말한다.</td><td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
가. 투자전략
(1) 모투자신탁에의 투자
※ 수준이라 함은 ±10%P 범위내를 말한다.</td></tr>
<tr><td>제2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동종유형총보수
(생략)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동종유형총보수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4부
집합투자기구
관련회사에
관한 사항</td>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인Best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오기 정정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9년 11월 21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"하나UBS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"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수준으로 한다.(수준이라 함은 ±10% 범위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"하나UBS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"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수준으로 한다.(수준이라 함은 ±10%P 범위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증권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9년 11월 21일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오기 정정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제2부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

<table>
<tr><td>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가. 자집합투자기구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/tr><tr><td>하나 UBS 글로벌 이머징 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 [채권-재간접형]</td><td>90% 수준 (수준이라 함은 ±10% 범위내를 말함)</td></tr></table></td><td>가. 자집합투자기구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/tr><tr><td>하나 UBS 글로벌 이머징 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 [채권-재간접형]</td><td>90% 수준 (수준이라 함은 ±10%P 범위내를 말함)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
가. 투자전략
(1) 모투자신탁에의 투자
※ 수준이라 함은 ±10% 범위내를 말한다.</td><td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
가. 투자전략
(1) 모투자신탁에의 투자
※ 수준이라 함은 ±10%P 범위내를 말한다.</td></tr>
<tr><td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td>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9년 11월 21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증권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9년 11월 21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 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

	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4.08%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위험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3.73%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위험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슈퍼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9년 11월 21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증권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9년 11월 21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 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

	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8.91% 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8.15%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유럽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9년 11월 21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증권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9년 11월 21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 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

	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2.62% 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0.14%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PIMCO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(UH)[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9년 11월 21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증권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9년 11월 21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	(생략)	(업데이트)

사항		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